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에 지자체장선거 추가〉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66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6. 1. 27.
3. 회 부 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대상 선거에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를 추가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 산정 비율을 현행 각 선거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u>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u> 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u>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u> 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u>지역구시</u>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 ----- <u>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u> ----- ----- ----- ----- ----- ----- ----- ----- <u>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u> -----. ② ----- ----- ----- ----- <u>지역구시·</u>

· <u>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u> · <u>시·군의회의원선거</u>에서의 여성 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 조금의 100분의 <u>50</u>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 4. (생략) ③ 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u>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u> <u>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u> <u>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u>의 후보 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 에 지급한다.	<u>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u> <u>·군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u> <u>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u>----- ----- ----- -----<u>25</u>를----- -----. 1. ~ 4. (현행과 같음) ③ ----- -----<u>지역구시</u> <u>·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u> <u>시·군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u> <u>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u>--- ----- -----.
---	---

현행법상 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해당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지급되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비율 이상을 추천한 경우 세부적인 기준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수의 비율, 득표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됨.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기준]

대상	보조금액	구체적 배분	배분 및 지급 기준
지역구총수 의 40%이상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 40%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40%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30%~40%	여성추천보조금 총액 30%	(40%이상 추천한 경우와 같음)	
20%~30%	여성추천보조금 총액 20%	(40%이상 추천한 경우와 같음)	
10%~20%	여성추천보조금 총액 10%	(40%이상 추천한 경우와 같음)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함.

또한 정당은 지급받은 여성추천보조금을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보고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재정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¹⁾

1)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는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 추천을 유인하는 재정적 장치가 부재하여,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실제로 국회의 경우 여성의원은 총 60석(지역구 36석, 비례대표 24석)으로 전체 의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제8기 지방의회 기준 광역의회는 약 20%, 기초의회는 약 31%가 여성의원으로 구성되어 제7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제, 여성추천 권고 규정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여성 국회의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4	2008	2012	2016	2020	2024
여성의원수	39	41	47	51	57	60
여성의원 비율	13.0	13.7	15.7	17.0	19.0	2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통계’

2)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기초단체장은 전체 226명중 7명(3.1%)으로 여성의 참여가 지극히 뒤쳐진 분야이다. 정당별 기초단체장 후보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4명, 진보당 1명, 무소속 5명이고, 당선자는 국민의힘 4명(68), 더불어민주당 3명(69)이다. 역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당선인이 5%를 넘긴 선거가 없었고,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여성 후보자가 2014년 40명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05.)

[제7기/제8기 당선자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광역				기초		
		소계	지역구	비례	교육의원	소계	지역구	비례
제 7기	계	794	705	84	5	2,898	2,519	379
	여	113 (14.2)	58	55	-	732 (25.3)	369	363
	남	681	647	29	5	2,166	2,150	16
제 8기	계	829	737	87	5	2,926	2,541	385
	여	160 (19.4)	98	62	-	900 (30.8)	526	374
	남	669	639	25	5	2,026	2,015	1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백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여성 진출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시·도지사 당선인은 0명(후보자 10명), 구·시·군의 장 당선인은 7명(후보자 33명)에 불과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시·도지사 당선인은 0명(후보자 6명), 구·시·군의 장 당선인은 8명(후보자 35명)에 그치는 등 구조적으로 저조한 여성 후보 추천 및 당선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 발굴·추천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당이 해당 선거에서도 여성후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 당선인 배출 확대를 통해 공직선거에서의 성별 대표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보조금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이 배분되는 선거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각 선거별 배분 비율이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되는 경우, 개별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조금 규모가 감소하게 되어 정책 효과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의 범위는 확대되나 각 선거 단위에서의 유인 효과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여성할당 비율을 준수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양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는바,³⁾ 국회 및 지방의회와 같은 합의제 기관에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목적과 정합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합의제 기관이 아닌 독임제 기관으로서 기관 구성의 다양성보다는 집행능력과 정책 추진력 등 개인의 직무수행 역량이 보다 중시되는 지위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와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소속 의원들이 사회 계층 비율에 비례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대표성 제고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여되나, 지방자치

3)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헌법학회(신옥주), 2021.12.

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합의제 기관과 그 성격이 달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